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54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1. 주식회사 B

2. C

변론 종결2020. 6. 11.

판결 선고2020. 7.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07.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08.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장동민

별지